

#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보고 및 의견청취 건 심사보고서

2016. 12. 6.  
복지도시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6.11.18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16.11.21.

다. 상정일자 : 제208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위원회(2016.12.6.)
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도시계획과장 김 영 흥

### 가. 제안이유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시설 결정일로부터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의 자동실효(2020.7.1.부터) 및 단계별 집행계획이 없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토지소유자 해제 신청(2017.1.1.부터)대비하여,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 해제 추진 및 존치시설에 대하여 자동실효를 대비하고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·추진하고 이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임.

나.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

○ 대상시설 현황 : 총 25건(구 설치의무시설, 2016.10월 기준)

구 분	합 계	장기미집행시설			10년 미만 시설
		소 계	도 로	공 원	도 로
건 수	25	21	17	4	4
면적(㎡)	230,433	227,617	55,899	171,718	2,816
사업비(억원)	2,020	1,954	744	1,211	66
보상비(억원)	1,846	1,786	645	1,141	60

○ 사업부서의 해당시설 해제에 관한 의견

구 분	합계	존 치 시 설				해 제 시 설		
		소 계	도 로 (장기)	도 로 (10년↓)	공 원 (장기)	소 계	도 로 (장기)	도 로 (10년↓)
건 수	25	19	13	2	4	6	4	2
면적(㎡)	230,433	228,082	54,248	2,116	171,718	2,351	1,651	700
사업비(억원)	2,020	1,879	656	12	1,211	141	87	54
사업비(억원)	1,846	1,709	560	8	1,141	137	84	53

- 도 로(토목과) : 도로의 연계성 및 이용편의를 고려하여 사업효과가 없는 6건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폐지검토

3. 검토의견

○ 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보고 및 의견청취 건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장기미집행시설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시설 결정일로부터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의 자동실효가 2020.7.1부터 시행되며, 집행계획이 없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2017.1.1부터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어 이에 대비하여 존치시설 및 해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 하고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한 것임.

○ 해당 장기미집행시설은 그 고시일로부터 20년 이상 지날 때 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로써 우리구는 집행부가 제출한 장기미집행시설 총 25건 중 도로 21건, 공원 4건임. 이중에 사업효과가 없는 도로 6건에 대하여는 해제(폐지)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음.

○ 본 건에 대하여 보고받은 우리구 의회는 보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구청장에게 보내야 하며,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청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해제를 결정하여야 함.

○ 장기미집행시설은 주민의 재산과 지역주민의 편의성, 우리구의 제정여건 등을 종합하여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심사결과 : 원안채택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8. 기타 : 없음